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45
----------	-------

발의연월일 : 2025. 10. 31.

발 의 자 : 문금주 · 이재강 · 주철현
박균택 · 이병진 · 문대림
서삼석 · 박용갑 · 김승원
권향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심의되며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는 등 긍정적이라 보여짐.

그러나 입법취지와는 달리 단순히 해당 안건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이에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무제한토론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06조의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제1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의장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지체 없이 표결”로, “5분의 3 이상”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제한토론의 실시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제한토론의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 ----- ----- ----- ----- ----- ----- ----- ----- ----- -----하며, 의장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	⑥ -----지체없이 표결-----3분의 1 이상----- -----

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 ⑩ (생략)

<신설>

-----.

⑦ ~ ⑩ (현행과 같음)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전원
의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
하여는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